

평택 브레인 시티 일반 산업 단지 용 지 공 급 공 고

1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방법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입찰보증금	비 고
공동주택	공동9	96,516	205,965,000,000	추 첨	5%	임대

※ 본 용지는 전 수분양자와의 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재분양되는 토지로서 현재 관련 소송(용지매매계약 해제 관련 민사소송 및 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로서 득한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본 용지를 구성하는 일부 필지에 전 수분양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존재하고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압류 등기 또는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존재 및 그로 인한 법적 제한 사항(권리행사 제한 내지 소유권이전의 지연 및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

가.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p>공고일 현재 아래 ①,②,③,④,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 확인 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p> <p>②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자</p> <p>③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p> <p>④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내역 등이 없는 자</p> <p>⑤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 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등이 없는 자</p> <p>※ ④,⑤의 처분사실 등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p>
------	--

- 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확인」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2023.03.23.~2026.03.23.)
- * (시행기준)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사용(준공) 검사일 기준으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 에 의함
 - * (시공기준, 도급공사자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축 사용검사일기준으로 건축완료한 세대수의 50% 인정 (ex, 600세대 이상 시공실적이 있어야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인정)
- 공동주택 건축공종을 시공한 자만 인정되며 부대공사는 인정 불가, 최초 도급공사자만 인정 되고 하도급사의 경우 인정 불가,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 세대수의 50%를 한도로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

- 실적증명 제출서류 :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기성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확인 후 발급하는 서류로도 확인 가능)

* 관리형신택사업은 주택사업자가 위탁자겸 시공사인 경우는 100%, 시행·시공이 분리 된 경우 각각 50% 인정

② 주택법 제7조에 의한 「시공능력」

- * 일반건설업자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 주택법상 시공능력
 - 자본금(5억원 이상)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액에 의함
 - 기술인 요건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중 1명과 토목 분야 기술인 1명이 포함되어야 함
- * 기술인 요건 확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술인 자격증명 서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관련 서류 중 하나)에 의함
- 주택건설 실적(최근 5년간 100세대) :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주택건설 실적확인서”에 의함 [사용(준공)검사일 기준 실적에 한함]

③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④ 「주택법」상 영업정지처분 :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의함

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에 의함

※ ④,⑤항의 제한기간은 공급공고일 기준 3년이내 부과된 제재처분에 대해 적용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신청	26.04.13(월) ~ 26.04.2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개 찰	26.04.28(화)	
낙찰자 발표	26.04.28(화)	
계약체결	26.04.29(수) ~ 26.04.30(목)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평택시 도일유동길 13-15, 1층)

※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pt-braincity.com>)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공급신청 및 당첨자 결정방법

가. 신청 접수

- ① 공급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으로 공급하는 필지는 공급예정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금액으로 입찰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② 금융기관(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한 무료공인인증서로는 입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③ 법인 신청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 1필지에 2개 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 법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⑤ 동일 법인이 동일 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 처리되고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⑥ 1개 법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필지별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신청건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입찰 신청서와 계약체결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⑨ 온비드(www.onbid.co.kr) 입찰참가 방법

구분	입찰참가 절차	비 고
1	온비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온비드전용공인인증서
3	입찰대상 물건확인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5	입찰참가 준수규칙 확인	
6	입찰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공급가격의 5%
8	당첨자 및 결과확인	

나. 당첨자 결정방법

- ① 추첨으로 공급하는 필지의 경우 공급예정가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온비드 자동결정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단독 신청일 경우 해당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반환·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① 입찰보증금은 공급예정가격(감정평가금액)의 5%이며,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납부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한 이후 추가 입금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입찰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④ 1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반환

- ① 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②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일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③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됩니다.
- ②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계약금 납부계좌

납 부 계 좌	계 약 금
국민은행393301-04-063539 (예금주: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입찰보증금 포함 공급가격의 1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시 공급금액의 10%(계약금)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계약금 납입영수증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용)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가. 대금납부조건

① 공동주택용지 : 18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차	2차	
납 부 시 기	계약시	6개월 내	12개월 내	18개월 내
비 율	10%	10%	10%	70%

나.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 ①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수납합니다.(토지사용승낙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② 토지대금을 선납한 후 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반환 조치합니다.
- ③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 일수에 지연손해금(현행 연 8.5%)을 부과합니다.
- ④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다. 대출 관련

- ①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연계대출은 없으며, 물건 담보는 불가합니다.

8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 및 면적정산

가. 토지사용

- ① 준공 전 토지의 사용은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받은 후 사용가능합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승낙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부득이하게 부지조성 공사 및 사업준공 지연 발생 시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인이 협의하여 진행함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 및 면적정산

- ① 소유권 이전은 조성사업 준공(준공일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고 면적 증감에 의하여 정산한 용지대금을 전액수납(지연손해금 포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②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필지별 분양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 상 공급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시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합니다.

- 가.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제한의 특례)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제한의 특례)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정부 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20.7.7.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공동주택용지 전매요건 강화 주요 내용
- (분양가 이하 전매 강화) 공동주택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또는 계약체결 후 2년 경과) 이후 분양가 이하 전매가능 조항 삭제
 - (PFV 전매요건 강화) 공동주택용지 PFV 전매요건을 원매수자 최대주주에서 과반(50%초과)주주로 강화
- 나.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0.02.21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최초계약 및 전매계약,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모두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마. 명의변경 시, 연체 원리금을 전액 해소하여야 하며, 대금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가.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토지대금 납부일(계약금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신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토지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 신고기간 내에 자신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급토지의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관계 법령 및 세금관련 사항을 세무사나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급공고문, 온비드 입찰신청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홈페이지, 사무실내방(평택시 도일유동길 13-15)을 통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용지공급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나.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고저, 양반, 법면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산업시설용지와의 이격거리 등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양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라.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에 따른 제약사항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마.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등,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바.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사업시행자에 임회를 요청하고 임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 사.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아.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열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자. 토지사용시기는 조성공사가 완료 된 후 사용 가능하고(토지사용가능) 토지사용시기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경된 시기에 따라야 합니다.
- 차. **공동98L 용지는 전 수분양자와의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재분양하는 용지로서, 전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보전처분 진행으로 공동98L 용지를 구성하는 일부 필지에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며(별첨 가압류 대상 필지 목록 참조), 또한 평택시 고시 제2023-177호(2023. 5. 17.)로 전 수분양자를 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 말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예정으로 가압류 등기의 말소 또는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는 일부 필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존재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 내지 소유권이전 지연 및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새로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지연 또는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 내지 소유권이전 지연 및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내지 승인 지연 등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가압류 대상 필지 목록(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단11198)

2026.04.13.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별첨. 부동산가압류대상필지목록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3	답	2,311
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	답	3,013
3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	답	2,873
4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	전	12,655
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	대	1,330
6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5	대	1,640
7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6	대	992
8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7	도로	458
9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8	대	661
10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9	잡종지	992
1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1	대	606
1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2	대	1,312
13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5	대	690
14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6	대	882
1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7	대	801
16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8	대	826
17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19	대	697
18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0	대	1,680
19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2	도로	339
20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4	잡종지	1,653
2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5	임야	4,064
2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6	대	1,418
23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29	임야	572
24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0	도로	614
2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1	대	1,577
26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2	도로	95
27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5	대	944
28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6	대	757
29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7	대	729
30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8	대	856
3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39	임야	1,635
3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1	도로	524
33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3	임야	585
34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4	대	848
3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5	도로	410
36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6	임야	2,356
37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4-48	임야	152
38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68-1	임야	286
39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68-2	임야	3,176
40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68-4	임야	1,332
4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83-5	대	660
4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83-7	잡종지	2,868
43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83-13	임야	2,076
44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69	답	4,349
4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69-1	답	1,441
46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72	답	3,551
47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38	답	2,891
48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39	답	1,980
49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40	답	2,949
50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4-1	전	2,208
5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4-3	전	520
52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8-5	전	6,290
53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9-1	답	3,269
54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9-2	답	1,408
55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0	답	2,400
56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1	대	1,977
57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1-2	답	350
58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1-3	답	1,210
59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2	답	588
60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2-3	답	94
6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3	답	3,881
62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4-1	답	3,213